KEB 외환은행

100-793 /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/ (Tel)729-8740 / (Fax)775-9812

외 환 : 939 - 0116- 2003. 11. 14
수 신 : 비은행감독국장, 은행감독국장
참 조 : 비은행검사2국장
제 목 :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

현재 당행의 자회사(지분율 43.93%)인 외환신용카드㈜의 향후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.

귀원에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외환카드사는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체율 증가, 유동성 부족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의 경영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특히, 11/17(월) 이후에는 유동성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나 최대주주인 당행으로서도 당행 자체의 Risk 측면에서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

이에 당행으로서는 외환카드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상실하였을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채권자는 물론 카드사 회원, 가맹점의 피해는 물론 카드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 바, 외환카드사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당행을 비롯한 대주주의 완전 감자를 포함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붙 임 :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. 끝.

㈜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

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

(2003. 11. 14)

외환은행

1. 배 경

유동성 문제 : 2003 년 11 월말까지 3,500 억원 부족
자본잠식 :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 조원(잠정) 초과
현재의 자본구조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임
채권자 및 회원, 가맹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

2. 구조조정의 목표

외환카드의 가치 및 회원, 가맹점의 보전
외환카드 채권자의 추가손실 방지
카드채 등 금융시장에의 충격 방지

3. 구조조정 방안의 개요

가. 요약

대주주 지분의 완전감자
적정 수준의 채무재조정
감자후 신규자본의 유입 및 외환은행과의 합병

나. 자본감소명령

금산법에 의한 감자명령
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 완전감자, 소액주주 20:1 감자

* 2003 년 3 분기말 현재 외환카드의 장부상 자기자본 2,322 억원
* 현실적으로 외환카드는 7,678 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(Mastercard 실사결과)
* 신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로 기존 대주주 지분 소각이 필요함
* 현재의 주가, 지분율로는 감자주총이 불가능하므로 금감위 감자명령이 필요
* 감자명령이 내려지면 이사회결의로 감자 가능, 이사회 부결시 관리인 선임
*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외환은행과 올림푸스 관계사를 의미
* 외환은행은 CEO, 올림푸스는 CFO 와 COO 를 선임하여 외환카드를 경영하여 왔음

다. 자본증가명령

금산법에 의한 증자명령
제 3 자 배정을 통한 감자대상 대주주의 신주 인수

* 증자명령은 감자명령과 함께 발령 가능
* 감자대상인 대주주에 대하여 신주배정, 이에 따른 추가출자 이행
* 추가출자 규모는 합병시까지 외환카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도

라. 합병명령

금산법에 의한 합병명령
외환카드를 외환은행으로 합병

* 합병명령은 증자 및 감자명령과 함께 발령 가능
* 약 6 개월 정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
* 합병으로 인하여 외환카드 유동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